

충남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이사 후보 공개모집 재공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충남사회서비스원 정관」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협력과 상생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함께 할 노동자 이사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직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11일

충남사회서비스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모집직위 및 선발인원

모집직위	모집인원	임 기	직 무 내 용
노동자 이사 (비상임)	1명	2년	○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등

2 응모자격

-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사회서비스원에 재직 중인 노동자

3 입후보 제외대상

- 「충남사회서비스원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 「단체협약 보충협약」제5조제2항 구체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보수

- 예산 범위 내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 실비

5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26. 8. 11.(화) ~ 8. 25.(화), 10:00~17:00
(주말, 공휴일은 등록 접수하지 않음)
- 등록방법 : 방문등록 (※ 모든 등록은 마감일 17:00 이전 등록에 한함)
- 등 록 처 :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전문건설회관 5층
충남사회서비스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
- 제출서류(후보자 등록서류)
 -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 ② 자기소개서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④ 입후보자 추천서(선거권자의 10% 이상 추천) ※추천서 명단 중복 불가
 - ⑤ 재직증명서 1부
- 입후보자 공고 : 2026. 8. 26.(수) 사회서비스원 누리집

6

선거운동

- 선거운동 : 2026. 8. 26.(수) ~ 9. 2.(수) 24:00
-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 : 출장처리
※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 미해당
-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 후 배포
 - 선거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벽보의 경우 가로 29.7cm×세로 42cm 이내
 - 동영상 파일, 전자우편 활용한 정견 발표 3회 이내 가능

7

선 거

- 선 거 일 : 2026. 9. 3.(목) 10:00~15:00
- 선거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 결과공고 : 2026. 9. 3.(목) 17:00
- 선거인 : 총214명(본원 126명, 소속시설 88명)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26.7.21.)
- 후보선출 : 유효투표의 다수 얻은 자 순으로 2인 선출
※ 득표수 동일한 경우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

8 향후계획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후보자 추천(도지사) ➡ 충청남도지사 임명
 -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 추천
 - 선거결과 최대한 반영하여 후보자 추천
- 최종 임명확정 및 공고 : 사회서비스원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지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모든 절차 및 운영은 「충남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 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재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름

- 금지사항 위반자의 경우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의결로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명령, 입후보 등록 무효 또는 선출 무효, 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입후보자 본인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자이사로 선출될 경우, 노동자이사는 임기동안 지위는 인정하되 노동조합원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 또한 병행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041-330-24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